

위험성 평가를 쉽게하는 방법

안전보건공단이 도와드립니다.

1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.

위험성평가란?

- ▶ **중처법 대응의 필수 절차**로서,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,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및 결정하여, 감소대책을 수립·실행하는 일련의 과정
- ▶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**사업주**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**의무화**
- ▶ 절차

컨설팅신청



컨설팅(1~2회)



인정신청



심사 후 인정

2 컨설팅 소개 및 혜택

내용	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컨설팅 - 1차: 위험성평가 소개 및 심사 준비 컨설팅 - 2차: 심사준비 현황 확인 및 보완
대상	전업종(건설업제외):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건설업종: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 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 150억원) 미만 건설공사
혜택 (인정사)	산재보험료 감면: 인정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 20% 감면 (50인 미만인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)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우선지원(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보조금 1,000만원 추가 지원) 등

3 컨설팅 신청 방법

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<http://kras.kosha.or.kr>) 로그인 → 컨설팅 신청



☎ 문의 : 한병덕 차장(043-849-1041)